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3. 23.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백혜련의원)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은 각각 세부 전문분야가 있어 자격 취득 시 지도사 등록증에 전문분야가 표기되고,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활동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경영지도사 자격은 인적자원관리분야, 재무

관리분야, 생산관리분야, 마케팅관리분야 등 4개 전문분야로 구분되고, 기술지도사 자격은 기술혁신관리분야, 정보기술관리분야 등 2개 전문분야로 구분됨.

[표 1] 지도사 자격 구분

| 종류        | 세부 전문분야  | 업무                        |
|-----------|----------|---------------------------|
| 경영<br>지도사 | ◦ 인적자원관리 |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           | ◦ 재무관리   |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
|           | ◦ 생산관리   |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
|           | ◦ 마케팅관리  |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
| 기술<br>지도사 | ◦ 기술혁신관리 |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
|           | ◦ 정보기술관리 |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도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시험은 1차(객관식) 및 2차(논술형) 시험으로 구분하여 각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구조임. 1차시험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각각의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2차시험은 선택한 전문분야에 따라 과목이 달라짐.

[표 2] 지도사 시험 과목

| 종류        | 구분         | 시험 과목                                          |                                                                                       |
|-----------|------------|------------------------------------------------|---------------------------------------------------------------------------------------|
| 경영<br>지도사 | 1차<br>(공통) | ①중소기업관계법령 ②회계학개론 ③경영학 ④기업진단론<br>⑤조사방법론 ⑥영어     |                                                                                       |
|           | 2차         | 인적자원관리                                         | ①인사관리 ②조직행동론 ③노사관계론                                                                   |
|           |            | 재무관리                                           | ①재무관리 ②회계학 ③세법(세무회계 포함)                                                               |
|           |            | 생산관리                                           | ①생산관리 ②품질경영 ③경영과학                                                                     |
|           |            | 마 케 팅                                          | ①마케팅관리론 ②시장조사론 ③소비자행동론                                                                |
| 기술<br>지도사 | 1차<br>(공통) | ①중소기업관계법령 ②산업경영공학 ③자연과학개론<br>④기업진단론 ⑤조사방법론 ⑥영어 |                                                                                       |
|           | 2차         | 기술혁신<br>관리                                     | 필수 ①기술경영학개론 ②생산계획<br>선택 ③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br>(택1)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론,<br>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
|           |            |                                                |                                                                                       |
|           |            | 정보기술관리                                         | ①정보통신개론 ②시스템응용 ③소프트웨어공학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sup>1)</sup>은 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중 “④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의미가 불명확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간 교차 응시의 경우에도 1차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영지도사 자격 소지자가 경영지도사의 타 전문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등으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간 교차 응시의 경우 1차시험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sup>2)</sup> 개정안에 따른 제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범문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수험생이 본인의 1차시험 면제 해당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범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2) 「2026년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 2026-005호)에도 “취득한 자격 내 분야만 선택 가능”하다는 문구가 예시와 함께 명시되어 있음.  
예시) 경영지도사 마케팅 분야 취득 후 경영지도사 인적자원 분야 응시 → 1차 시험 면제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법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br>① -----<br>-----<br>-----<br>-----<br>-----<br>-----<br>-----.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br>① -----<br>-----<br>-----<br>-----<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 4. <u>지도사 자격</u> 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u>지도사자격 시험</u> 에 응시하는 사람                                             | 4. <u>경영지도사 자격</u> -----<br>----- <u>경영지도사 자격시험</u> -----                        | 4. (개정안과 같음)                                                                     |
| <신설>                                                                                                       | 5. <u>기술지도사 자격</u> 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u>기술지도사자격시험</u> 에 응시하는 사람                | 5. (개정안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 <b>부칙</b><br>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 <b>부칙</b><br>이 법은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                                           |

법률 제 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지도사 자격”을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지도사 자격시험”을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br>-----<br>-----,<br>-----<br>-----<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u>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u>                                                    | 4. <u>경영지도사 자격</u> -----<br>----- <u>경영지도사자격시험</u> -----           |
| <u>&lt;신    설&gt;</u>                                                                                   | 5. <u>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